

화학물질 수출·입 절차 안내

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1. 이법에서 정의한 화학물질이란?

-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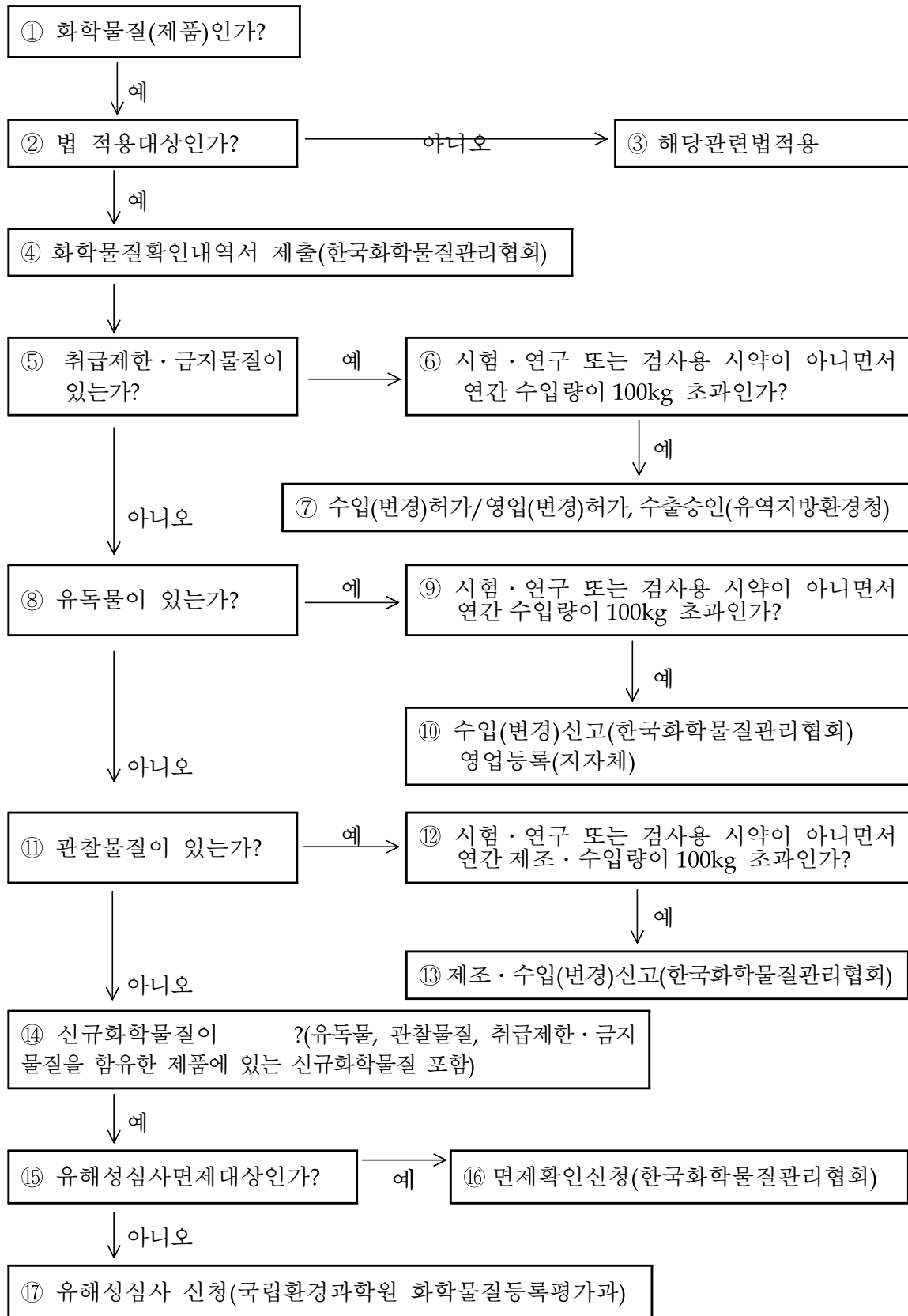
2. 이법 적용제외 화학물질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를 포함한다)
-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절차 변경

'06년 이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해당하는 HSK No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부터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통관
'06년 이후	모든 화학물질은 수입 전에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후 통관 - 제조 화학물질도 제조 전에 확인내역서 제출

II.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Ⅲ. 흐름도의 세부절차

1. 화학물질확인 내역서 제출

- 제출대상 :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의 장에 제출하여야 함**
 - 제조자 : 국내 제조자를 의미함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 제출시기 : 제조 또는 수입 전
-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Article)은 확인내역서 제출 면제. 단, 프린터나 복사기의 토너는 확인내역서 제출 대상임

2.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있는가?

-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 취급제한물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 목적)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수입시 별지 제30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kg이하의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취급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 물질의 종류 및 함량변경이란 허가받은 제품(상품)에 함유된 취급제한물질이 변경되거나 또는 취급제한물질의 함량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동일)

- 허가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 ※ 각 제품별 허가받은 수입예정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이하 동일)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허가

- 취급제한물질을 제조·수입업(판매목적), 판매업(알선포함), 보관·저장, 운반업, 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수입의 경우 수입 목적에 따라 수입허가와 수입영업허가로 구분됨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허가 면제

- 시행령 제21조 참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수출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 변경승인

-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

□ 취급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의 금지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취급금지물질은 제조, 수입, 사용 등을 할 수 없음

3. 유독물이 있는가?

유독물 수입신고

- 유독물을 최초 수입시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유독물 수입 변경신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협회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신고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

유독물 수출신고는 폐지

유독물 영업등록

- 유독물을 **제조(판매 목적), 판매(알선 포함),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받아야 함
 - ※ 유독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판매업등록을 각각 득하여야 함

유독물 영업등록 면제

- 시행령 제16조 참조

4. 관찰물질이 있는가?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 관찰물질을 최초 제조·수입시 별지 제28호서식을 작성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찰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협회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대상 : 유독물수입 변경신고 대상과 동일
 - ※ 관찰물질은 영업등록대상이 아님

5.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임

-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대상인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협회의 장**에게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을 하여야 됨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
-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중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 모든 블록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블록고분자화합물
-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래프트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 다음 각목의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학물질
 - 가. 고분자 단량체가 유독물, 관찰물질, 신규화학물질 및 에폭시 화합물에 해당되지 않음
 - 나. 수용해도가 pH 2, 7 및 9에서 5mg/g 이하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1991년 2월 2일 이전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7.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 유해성심사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등록평가과에 유해성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8. 기타 주의사항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판매 또는 사용이 중지됨
-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대상자는 “관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임
- 유독물 등의 신고(허가)는 매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최초 1회 신고(허가)로 변경됨. 단, 변경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신고(허가)
- 신규화학물질 및 유독물 등의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방법
 - 신규화학물질
 - ⇒ 수입량이 1,000kg인 KH-403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 수입량(1,000kg) × 5% = 50kg(수입량이 연간 100kg 이하이므로 유해성심사면제신청 대상임)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 ⇒ 수입량이 1,000kg인 KH-403 제품에 유독물 Sodium hydroxide가 5% 함유한 경우
 - ⇒ 유독물 함유량에 관계없이 수입량이 1,000kg이므로 유독물 수입 신고 대상임
 -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도 유독물과 동일하게 적용

IV.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작성요령

①	<input type="checkbox"/> 제조 화학물질확인내역서 <input type="checkbox"/> 수입					
②	제 조 (수입)자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③	제조(수입) 제품내역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⑨ HSK No.	⑩ 주요용도	
④	⑪ 확인방법	<input type="checkbox"/> 성분내역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input type="checkbox"/>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⑤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⑫ 상 호(명칭)		(전화 :)		
		⑬ 주 소				
		⑭ 담 당 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⑥	⑮ 확인 내용	구분	함유여부	있 음		없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대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해성심사면제대상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화학물질명(CAS No.)			<input type="checkbox"/>
			함량 또는 함량범위(%)			
		관찰물질	화학물질명(CAS No.)			<input type="checkbox"/>
함량 또는 함량범위(%)						
취급제한· 금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input type="checkbox"/>		
	함량 또는 함량범위(%)					
⑯ 비 고						
⑦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제조 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수입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 ² (재활용품))			

- ①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체크
- ② 제조(수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제조(수입)자의 내역을 기재
- ③ 제조(수입)제품 내역 :
- 제품명(상품명) :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서 (면장)의 “거래품명” 또는“모델/규격명”을 기재한다.
 - 수입국 : 수입의 경우에 한하며 원산지를 의미함
 - 연간제조(수입)예정량 :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을 예상하여 기재한다.
 - HSK No(세번부호) :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 분류표의 품목번호(세번부호)를 기재한다.
 - 주요용도 :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주요사용용도를 기재한다.
- ④ 확인방법 : “⑮란 확인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한다.
- 성분내역서 :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내역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증명신청 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자(국내 제3자)가 성분내역서를 수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⑮란의 규제대상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제공한 경우
- ※ 예시 참조
- ⑤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⑪란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에 체크한 경우에 한하며 서류를 제공한 상호, 담당자 등을 기재한다.
- ⑥ 확인내용 :
- 신규화학물질 : 함유여부를 확인 후 해당란에 표시
 - 유해성심사대상 :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kg 초과인 경우
 - 유해성심사면제대상 :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하인 경우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함유한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화학물질명, CAS No, 함량(%)를 기재하여야 함
- ※ 각 해당 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함
- 예) 유독물을 함유한 경우 별도의 유독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 해당물질의 확인 방법은 뒷장 참조
- ⑦ : 제조(수입)자의 명판, 직인이나 서명을 한다.(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1. 성분내역서 예시

① 제조(수출)자가 성분 및 함량을 모두 밝힌 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m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1) QuRar 4040-a (제품명)		
2) Chemical name	3) CAS No.	4) 함량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25215-62-7	42%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styrene and 1,2-ethanediol	27881-32-9	3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23%
6) Best Regards,		
Dr. H. Damasa Assistant General Manager, Technical Center		
DATE :		

※ 이 경우 함량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 성분내역서에는 제조회사내역, 제품명, 화학물질명, CAS No, 함량, 작성자 이름 및 서명, 작성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② (수출)자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1)

	KASMI Ltd.
	1-21-7, Toranomom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u>LSB-404052</u>
Decanoic acid octyl ester	2306-92-5
Methylphenylsilane	766-08-5
1,2,4-Triazole-3-carboximide	3641-08-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u>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u>	
〈함량을 대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내용임〉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	
DATE :	

※ 모든 구성성분이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이 없고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가 다 되어있으므로 각 성분의 함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문구는 있어야 함

③ (수출)자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2)

	KASMI Ltd. 1-21-7, Toranomom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i>LSB-FsrP1</i>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5-amino-1,3,3- 20% 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2,2-dimethyl- 1,3-propanediol, 1,1'-methylenebis[4-isocyanato- cyclohexane] and 2,2'-oxybis[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1-isocyanatooctadecane, compds. with N-butyl-1-butanamine	148828-26-6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3-butanediol, diisodecyl ester	68511-12-6
Potassium hydroxide	1310-58-3 3%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	
Sincerely yours,	
Jon R. Arnson Product Manager-Organolithiums	
DATE :	

※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인 경우는 반드시 성분 중의 일부 함량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경우이다.

- 성분 중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5-amino-1,3,3- 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148828-26-6]*” 이 신규화학물질이라면 수입량에 따라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또는 유해성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함량이 있어야 한다.
- “*Potassium hydroxide[1310-58-3]*” 은 유독물 97-1-137번으로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인 경우에 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량이 있어야 한다.
- 관찰물질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함량을 밝혀야 한다.

2. 제조(수출)자가 제공한 확인서 예시

① 서식 ⑮항 규제대상물질이 없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does not contain any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② 서식 ⑮항 규제대상물질이 있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New Chemical			
Toxic Chemical			
Observational Chemical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3. 확인을 위임받은 자(국내 제3자)가 제공한 확인서 예시

- 외국의 제조 또는 수출자가 노하우 등을 이유로 수입자가 아닌 국내 제3자에게 성분내역서를 제공한 경우 위의 영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내 거주자가 수입자(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확인내역서를 작성·제출함

4.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 제도

- 성분내역서를 보유한 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대상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확인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회장에게 화학물질확인을 신청하는 제도임
- '06년 1월 이후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을 면제함

5. 기타 주의사항

-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시 제조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분내역서 등은 협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함

6. 규제대상물질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http://newchem.nier.go.kr> 입력 - 화학물질목록 메뉴 클릭 - 화학물질검색 메뉴 클릭
-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ncis.nier.go.kr/> 직접 입력

② 검색방법

⇒ 구성성분별 CAS No, 화학물질명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③ 검색 결과 확인 방법

화학물질검색 Chemical Search

SEARCH 화학물질검색

전체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사고대비물질
 대량생산화학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로테르담협약물질

50-00-0

CAS번호순 10개씩

CAS번호	기존화학물질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50-00-0	KE-17074	Formaldehyde ; Formalin	포르말린	97-1-345		
13150-00-0	KE-31442	Sodium 2-[2-[2-(dodecyloxy)ethoxy]ethoxy]ethyl sulfate				
68650-00-0	KE-16170	Fatty acids, tall oil polymers with pentaerythritol, phthalic anhydride and tung oil, oxidized				

1. PDF 인쇄

*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을 클릭하면 물질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물질에 대한 세분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
- ⇒ 검색 결과가 없는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됨
-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될 경우 해당물질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7. 화학물질의 사후관리

- '06년부터 협회는 제출된 확인내역서와 세관 통관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환경부와 지방(유역)환경청에 보고하면 지방(유역)환경청은 이를 근거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사후관리

V.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유독물수입 신고 등을 할 수 있음

① 접속 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접속 - 좌측 “전자민원서비스” 배너 클릭 후 접속
- 인터넷 주소창에 “http://ols.kcma.or.kr” 입력 후 접속



② 이용절차

-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가입(무료)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용
⇒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음

③ 이용가능 전자문서

- 현행 :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유독물/관찰물질 신고
- '07년 8월 이후 :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 유독물/관찰물질 변경신고

VI. 기타

1. 업무별 관할기관

구 분	업무명	관할기관	처리기간
제조/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60일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일
유독물	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즉시
	영업등록	시·도지사	10일(판매 5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즉시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즉시
	영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7일(판매 5일)
	수출승인	유역(지방)환경청	90일 이내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	15일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	-
보고 및 검사 등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2.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위 반 행 위	처 분 사 항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미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성심사 미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성심사면제 미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영업 미등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영업변경등록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수입신고 미이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수입 신고(변경)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수입 신고(변경)미이행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무허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취급제한금지물질 변경허가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취급제한금지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변경미이행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 미이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찰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미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류 기록·보존 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Ⅶ. 각종 민원신청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사용용도		⑨ 제조(수입)량		kg
신청내용	⑩ 화학물질명 또는 총칭명		⑪ CAS No	⑫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
	⑬ 구조식			
	⑭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kg	⑮ 자료보호신청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⑯ 면제신청사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유 독 물 수 입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고 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 :)					
신 고 내 역							
⑥수입제품명 (상 품 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 예정량(kg)	⑩HSK No.	유독물 함유내역		
					⑪명칭	⑫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⑬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수입신고를 합니다.					수 수 료		
					13,000원 (매품목당)		
<p>년 월 일</p> <p>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협회장 귀하</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번호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변경신고서		처 리 기 간
제 호		<input type="checkbox"/> 관찰물질		즉 시
신 고 인	① 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제조(수입) 제품명 (상품명)				
변 경 사 항	⑦ 변 경 전		⑧ 변 경 후	
<p>「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유 독 물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 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협회장 귀하</p>				
※ 첨부서류				수 수 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필증 원본				9,000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관 찰 물 질 <input type="checkbox"/> 제 조 <input type="checkbox"/> 수 입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상 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주소(사업장)	(전화 :)					
신 고 내 역							
⑥제품명 (상품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 수입예정량 (kg)	⑩HSK No.	관찰물질 함유내역		
					⑪명칭	⑫ 또는 CAS No.	⑬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 수 료	
						13,000원 (매품목당)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협 회 장 귀 하 </div>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청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신 청 내 역							
⑥수입제품명 (상 품 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연간수 입예정 량(kg)	⑩ HSK No.	취급제한·금지물질 함유내역		
					⑪명칭	⑫취급제한· 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⑬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수 수 료		
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13,000원 (매품목당)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div>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1)]

유독물 수입 실적보고(년도분)					
신고번호 : 제 호					
보 고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사업장경유하천		()			
⑦유독물 수입 실적					
제품명 (상품명)	유독물명	유독물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⑧ 합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3)]

관찰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 실적보고(년도분) <input type="checkbox"/> 수입					
신고번호 : 제 호					
보 고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사업장경유하천		()			
⑦관찰물질 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관찰물질명	관찰물질 함유량 (%)	제조(수입) 량(톤/년)	주요용도	CAS No.
⑧합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